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붙임참조

4. 검 토 의 견: 붙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12월 18일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권태환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함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규정을 시민이 이해가 편리하도 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